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도로교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운전자가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하여야 하는 때에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하는 경우 신설,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과태료 신설 등의 내용으로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18741호, 2022. 1. 11. 개정, 2022. 7. 12. 시행)됨에 따라,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하는 경우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,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승용자동차의 경우 7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,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주·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범칙금을 6만원으로 정하고,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범칙행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 합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7월 중 실시 예정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 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때	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(그 교차로의 가장자리)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	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별표 6 제11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8.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	제160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8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7만원
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8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의4.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(주·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)	제54조제1항	1) 승합자동차등: 13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12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8만원 4)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: 6
--	---------	---

		만원
--	--	----

별표 8 제45호 중 “지정차로”를 “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, 지정차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6,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경찰청 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